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및
사법경찰관 등에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등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3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내용	4
2.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13
3.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 절차와 공개 제한	15
4.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28
5.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38
6.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42
7.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45
8.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명 등 출판·방송 제한	5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5. 1. 20.
3. 회 부 일: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협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7항).

나.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다.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조).

- 마.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 바.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등).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의 요건과 내용을 변경하고, 아동학대범죄 사건 처리 절차에서 관계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한편,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판·방송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을 범죄의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며, (긴급)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기준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한편,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함(안 제13조 등).
-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안 제14조 등),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처리 허용(안 제24조 등) 등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 관계기관 간의 권한 범위를 조정함.
- 아동의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등을 금지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 ③ (생략)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검사가</u>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④ ----- <u>사법경찰관이</u>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u>재발될</u>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u>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u>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 ----- ----- <u>발생할</u> ----- ----- ----- ----- ----- ----- ----- ----- ----- <u>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호</u> ---

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
법원-----

-----.

②

친구를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제15조(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

----법원에-----임

시조치를 청구-----

--.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③ 사법경찰관은 -----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 7.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정구성원에 대한 -----

--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검사, 사
법경찰관, -----

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 . <후단 삭제>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아동보호사건의 송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신 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

-----검사, 사법경찰관,-----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 3의2.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한 사람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경찰관
서의 장에게 송치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
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제19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유치장예의
유치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

1. ~ 3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u>5. · 6.</u> (생 략) <u><신 설></u> <u>②</u> (생 략)	<u>4. · 5.</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u>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 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

2.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 개정안의 내용을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개정사항	대상 조문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등 변경	안 §13① 등
	◦ (긴급)임시조치 사유 변경: 범죄의 '재범 우려' → '발생 우려'	안 §13① 등
	◦ 긴급임시조치 내용 변경: 유치장 유치 추가	안 §13①
	◦ (긴급)임시조치 중 접근 금지의 기준 변경 장소 → 사람	안 §19①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안 §59
관계기관 간의 권한 조정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안 §14① 등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안 §24 등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안 §24
	◦ 사법경찰관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안 §28
2차 피해 방지	피해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 출판·방송 제한	안 §35 등
	◦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금지 의무	안 §35④
	◦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시 과태료 부과	안 §63②

□ 2025년 9월 현재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으로는 총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임시조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위반 행위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는 3건이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 내용
2202218	이만희	2024.07.25.	◦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 과태료 1천만원↓ → 징역 1년↓/벌금 1천만원↓/구류
2205206	전용기	2024.11.05.	◦ 임시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208196	정일영	2025.02.18.	◦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

○ 검찰 송치 등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는 4건이 있음.

- 4건의 법률안 모두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 내용
2207478	백승아	2025.01.14.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중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불송치
2207762	정성국	2025.01.24.	◦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인 사건은 검찰 불송치
2207796	최은석	2025.01.24.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중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불송치 ◦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 인정
2208801	김태선	2025.03.12.	◦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중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불송치 ◦ 사건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에게 불송치 사실 통지

□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제2207627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며,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 내용
2207627	임호선	2025.01.20.	◦ (긴급)임시조치 사유를 범죄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 ◦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유치장 유치 추가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부과 ◦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권자 지정권 및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가정보호사건 처리 허용 ◦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제한

3.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 절차와 공개 제한

-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인데(제2조제4호),¹⁾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등도 기본적으로는 「형사
소송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상의 특례도 규정하고 있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개시와 피해자 보호조치

- 아동학대범죄도 다른 범죄처럼 고소, 고발, 범죄 신고 등에 의하여 그 처리 절차가 개시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보육·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범죄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제10조).²⁾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범죄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³⁾이 배제되는 등 고소에서의 특례도 인정됨(제10조의4).⁴⁾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 11. (생략)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 26. (생략)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현장출동 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음.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로 제한됨(제11조).⁵⁾

□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은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

○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등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범죄행위 제지,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의 초동적 대응을 의미함(제12조).⁶⁾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 ⑦ (생략)

6)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 반면,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격리나 접근 금지, 친권 등 행사 제한, 상담·교육 위탁 및 유치장예의 구금 등 조치를 의미함(제19조).7)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⑤ ~ ⑧ (생략)

7)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예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예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고(제14조 및 제15조),⁸⁾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루어짐.
- 임시조치로 내려진 격리, 접근 금지 또는 친권 행사 제한 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제59조).⁹⁾

8)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한편, 긴급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으나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하는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의 조치임(제13조).¹⁰⁾
 - 긴급임시조치는 임시조치의 유형 중 일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임시조치와 유사하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응급조치와 유사함.¹¹⁾ 다만, 응급조치의 경우와 달리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음.
 - 긴급임시조치로 내려진 격리나 접근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제65조).¹²⁾

10)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11)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긴급조치이므로,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시간 내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원이 임시조치 청구를 배척한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되어야 함(제15조제2항·제3항). 따라서 같은 유형의 조치라도 긴급임시조치는 임시조치보다 그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음.

12)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각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

구 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요건	◦ 아동학대범죄 진행 중 또는 급박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 긴급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조사·심리·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
절차	◦ 사법경찰관리등 조치	◦ 사법경찰관 조치	◦ (사법경찰관 등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내용	◦ 아동학대범죄 제지, 아동 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중 일부를 인용)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등 행사 제한,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 구금 등
위반 시 제재*	-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징역(2년 이하)/벌금(2천만원 이하)/구류

* 일정한 유형의 조치에 한하며, 위반 시 제재와 별도로 업무수행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존재 (§61)

나.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송치와 형사제재

- 아동학대범죄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수사는 주로 경찰이 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에서 검사로의 사건 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송치가 이루어지나(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¹³⁾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¹⁴⁾에 따라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아동학대범죄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부여될 형사제재를 1차적으로 선택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을 대신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¹⁵⁾¹⁶⁾

1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4)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5)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아동학대행위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5호),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자의 의미를 지님.
- 16)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 임시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처분도 포함되어 있음.

○ 이처럼 보호처분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하며(제2조제6호), 아동학대처벌법 중 제4장이 아동보호사건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범죄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건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아동학대 행위자를 불기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7조),¹⁷⁾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¹⁸⁾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17)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등으로 소추조건이 흠결된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원가정(原家庭) 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제26조 및 제27조 등).¹⁹⁾
- 한편, 아동학대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전건(全件)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검사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등).²⁰⁾

19)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0)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개 제한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내용에 대한 공개는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음.²¹⁾
-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신상, 범행수단 등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한되고(「형법」 제126조 등),²²⁾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임.

21)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2) 「형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공보규정”), 경찰청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경찰공보규칙”) 등 역시 형사사건의 원칙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공보규정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경찰공보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이하 “피의사실등”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와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언론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 내지 보도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제35조 및 제62조),²³⁾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및 관련 내용의 공개 제한을 한층 강조하고 있음.²⁴⁾

23)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제2항이 피해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헌재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다. 이에선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정보 보도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① 아동학대 범죄 수사와 아동보호사건 조사·심리 등에 관여한 사람,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등 언론기관 등의 종사자, ③ 피해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임.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등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언론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교육·보육 담당 교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취학·진학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각각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부담함.²⁵⁾

< 대상자 유형별 비밀엄수 등 의무의 내용 및 벌칙 >

구 분	내 용	벌 칙	비 고
범죄 수사, 보호사건 등 담당·관여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징)2년↓/(자)5년↓	전·현 공무원
		(징)3년↓/(자)10년↓/700만원↓	전·현 변호사
		(징)3년↓/(자)5년↓/3천만원↓	기 타
신문·방송·출판 등 종사자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의 인적사항, 사진 등 보도·방송 금지	500만원↓	
교육·보육 교직원	피해아동 취학·진학·전학·입소 등 사실 누설 금지	-	

주: (징)은 징역 또는 금고, (자)는 자격정지

25) 아동학대처벌법은 다른 유형의 비밀엄수의무와 달리 교육·보육 담당 교직원의 비밀엄수위반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일정한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67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생 관련 자료 제공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의6 제1항 또는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강제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임.

○ 안 제13조제1항 등이 (긴급)임시조치의 사유인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9조제1항이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으로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고 접근 금지의 기준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강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내 용	대상 조문
(긴급)임시조치 사유를 범죄의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	안 §13①, 안 §14①
(긴급)임시조치 유형 중 접근 금지의 기준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	안 §19①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	안 §13①

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사유 변경

1) 검토의견

-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9조제1항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사유를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로 변경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널리 인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과도한 권익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나 긴급을 요하여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때 인정되므로(제13조제1항), 성격상 응급조치 이후의 조치임.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제12조제1항), ‘아동학대범죄(라고 추정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법상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함(제2조제6호).²⁶⁾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따라서 현행법 제13조제1항 등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란 사건 처리 절차 개시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임.

- 임시조치 역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실시되는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같게 보아야 할 것임.

26)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한편, 안 제19조제1항을 아동학대범죄(라고 추정되는 행위)의 발생 전에도 그 발생 우려만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위험 없이도 친권 등 권한 행사의 제한, 유치장 유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음.

-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로서의 유치장 유치는 총 4개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제19조제4항),²⁷⁾ 범죄 내지 그 의심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기간의 상한은 총 30일임(「형사소송법」 제202조 등).²⁸⁾

27)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유치장 유치(제4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8)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① 안 제13조제1항의 경우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란 응급조치 이후의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② 안 제14조제1항의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장래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4조제1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응급조치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 출동 등이 실시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라는 더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할 우려’만을 들어 친권 등 행사의 제한·정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우려에 기초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접근 금지 기준 변경

1) 검토의견

□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중 100m 이내 접근 금지에서 거리 산정의 기준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피해아동 등의 현위치를 고려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장소 기준을 배제하는 경우 보호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의 기준을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 등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그 기준을 ‘피해아동’ 등의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 등 시설의 규모가 100m를 초과하거나 피해아동이 주거에 실재하지 않은 등의 경우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부과하는 경우 장소와 사람 모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제29조제1항제2호),²⁹⁾ 참고할 필요가 있음.

29)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접근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아동학대행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해당 임시조치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피해아동 등이 주거 등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접근 금지 대상자가 그 주거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소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유사 입법례인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장소와 사람을 모두 접근 금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제29조제1항제2호).³⁰⁾
- 경찰청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직접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학교, 주거 등의 장소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소와 사람 모두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0)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다.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으로 유치장 유치 추가

1) 검토의견

□ 안 제13조제1항은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여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인 만큼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법이 임시조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포함하면서도,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에는 유치장 유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헌법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대하여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헌법 제12조).³¹⁾

3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유치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체포·구속 등과 유사하므로,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만 유치장 유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검사와 법원이 관여함이 없이 사법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유치장 유치의 경우 체포·구속과 동일한 정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여서 영장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재범 예방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치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로서, 법원의 법률적 판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영장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유치장 유치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으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만으로는 범죄예방이 곤란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유치장 유치를 도입하는 경우 임시조치에서의 유치장 유치와 같이 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고지가 필요할 것이므로,³²⁾ 현행 제20조에 대한 준용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2)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는 임시조치로 유치장 유치(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가. 검토의견

□ 안 제59조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사건 처리 절차의 각 단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해당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그 내용을 막론하고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나(제63조제1항제4호),³³⁾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조치의 내용에 따라 형벌, 과태료 또는 제재 없음 등으로 나뉨.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조치 내용	위반 시 제재	조치 내용	위반 시 제재	조치 내용	위반 시 제재
퇴거 등 격리	과태료	퇴거 등 격리	형 벌	-	형 벌
100m 내 접근 금지		100m 내 접근 금지		(물리적) 접근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등 행사 금지	-	친권 등 행사 금지	과태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유치장 유치*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전문기관 상담·교육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 「형법」상 도주죄 적용 가능성 있음

33)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긴급조치적 성격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의 경우를 보면,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³⁴⁾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⁵⁾
-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임시조치가 임시조치의 청구·결정 전까지는 취소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처벌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미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가정폭력처벌법 등 유사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5)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① · ② (생략)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시조치의 청구·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되어야 하므로(제15조),³⁶⁾ 이처럼 그 적법성이 확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이행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나 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에 대하여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결정이 없으면 즉시 취소되어야 하므로 취소가능성이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유사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갖춘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피해아동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임시조치의 청구·결정이 없는 경우까지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형사처벌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의 즉각적·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6.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가. 검토의견

□ 안 제14조제1항은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제4항 등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됨.

현 행	개 정 안
○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피해아동등 법정대리인·변호사 지자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신청 요청 사법경찰관 ↓ 청구 신청* 검사 ↓ 임시조치 청구 법원 보호관찰관 ↓ 청구 요청 검사 ↓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임시조치청구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청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	피해아동등 법정대리인·변호사 지자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청구 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 청구 신청 검사 ↓ 임시조치 청구 법원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청구 법원

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청·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 가능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조치 절차가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이라는 2~3단계 절차에서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이라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되므로 임시조치의 신속한 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시조치의 경우 친권 등 행사 제한,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조치로서 헌법상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시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 각종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유형의 조치뿐만 아니라 친권 등 행사 제한, 유치장·구치소 유치 및 의료기관 위탁 등 긴급임시조치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조치도 포함됨(제19조제1항).³⁷⁾

37)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임시조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유치장 유치 등의 경우 체포·구속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영장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긴급을 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 등이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 제한, 유치장 유치 등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절차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거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현행법의 이원적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가. 검토의견

□ 안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도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음.³⁸⁾

3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제2호의 ‘그 밖의 경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혐의 없음’뿐만 아니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사유가 포함됨(수사준칙규정 제51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사준칙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안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치 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같은 태도로 보임.

따라서 안 제24조에 따르면 불기소사유가 존재하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하여도 사건 불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동학대처벌법에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피해아동 등의 보호가능성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보호사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의 대상에는 공소권흡결 등의 불기소사유가 있는 자, 기소 가능한 혐의자가 모두 포함되므로,³⁹⁾

39)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특수성도 사건 송치 범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여부는 보호사건 처리 절차의 구조 설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임.

□ 개정안에서 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부분은 안 제27조 이하의 내용으로, 안 제27조 이하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동기·성질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원가정(原家庭) 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안 제27조),

사법경찰관이 특정한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안 제28조),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41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이러한 안 제27조 이하는 사법경찰관의 1차적인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인하여 보호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제36조제1항),⁴⁰⁾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⁴¹⁾

40)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41) 대법원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소급효가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등.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동학대범죄의 혐의가 없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보호사건 송치는 검사의 기소에 준하는 것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 은폐가 용이하고 자력구제가 어려우며 보호사건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現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현행법이 수사준칙규정상의 불송치결정 대상인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제2항) 등도 제시하고 있음.

□ 경찰청은, 안 제24조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명 등 출판·방송 제한

가. 검토의견

□ 안 제35조제4항은 피해아동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사건명 등을 출판·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안 제63조제2항은 위 금지에 반하여 출판·방송한 사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미 피해아동 등의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게 비밀엄수, 출판·방송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 의무의 수범자들을 확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35조제4항 등과 같이 출판·방송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제2항 등과 안 제35조제4항 등의 문언을 비교하여 보면, 그 수범자와 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수범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35조제2항은 ①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②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③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35조제4항은 출판·방송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 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제35조제2항은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의 출판·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안 제35조제4항은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이나 사건명의 출판·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현행 제63조제3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63조제2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법	개 정 안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현 행 법	개 정 안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②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안 제35조제4항 등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나 동 규정상 출판·방송 등의 의미가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안 제35조제4항에 사용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 피해아동 등의 주소·성명·나이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35조제2항 등의 규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현행법은 이미 피해아동의 성명 등 그 밖에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려는 취지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